

2025년도 제8회 충청북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충청북도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7월 21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개요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역)
송무행정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법무혁신담당관(청주)

※ 임용기간은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예정분야 주요업무

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송무행정	· 행정심판 중요사건 심리자료 작성, 현지조사, 재결서 작성 등 · 소송 업무 자문 수행(답변서, 준비서면, 입증자료 검토 등) · 도정현안(시책사업 등) 법률 검토 및 행정업무 법률 자문 및 법령해석 · 각종 법령·판례 등 법률 검토 및 자문 · 기타 부서장이 부여하는 업무 수행

※ 자세한 주요업무, 필요역량, 전문지식 등은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

3. 응시자격

※ 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결 격 사 유 】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거주지 및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 및 경력요건

임용예정분야	자격 및 경력요건
송무행정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적격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평정성적(총점)이 우수한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동점자 초과합격)

※ 서류전형 심사평정 기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임용예정분야와 실무경력의 적합성 및 연관성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평정의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25. 8. 1.(금) ~ 8. 5.(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5. 8. 11.(월) ~ 8. 12.(화)
- 면접시험일 : 2025. 8. 20.(수) ~ 8. 21.(목)
※면접 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5. 8. 25.(월)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sihum/index.do>)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8. 1.(금) ~ 8. 5.(화) 09:00 ~ 18:00
- 접 수 처 : 충청북도청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본관 1층 101호)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 해당 금액의 **우편통상환**(우체국 구입) 동봉하여 발송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 주소:(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본관 101호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응시원서 재증)
 - ▶ 우편으로 원서를 발송한 응시자는 마감 기한 내에 전화(043-220-4733, 4734, 4736)로 우편접수 예정임을 고지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방문접수 : 근무시간(09:00~18:00) 중 위 접수처로 방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농협은행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응시수수료 해당 금액의 **‘충청북도 수입증지’** 구입·부착 후 제출
(‘정부 수입인지’ 사용 불가)

◆ 응시수수료 : 1만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과 임용예정분야 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사본은 시험실 시기관에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시험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농협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수입증지 구입·부착 후 제출 - (우편접수)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후 발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 응시자격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담당업무 등)
3.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A4 3매 이내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
4.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3매 이내로 작성
5.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자격증·면허증 사본 : 필수서류	○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면허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 분	내 용
7. 경력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6호-필요시) : 필요시 제출	○ 근무기간, 주근무시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발행기관(회사)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및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첨부하거나, 별지서식(제6호)을 사용하여 제출 - 경력기간(근무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일부 인정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아래의 자료 등 보완서류를 제출 -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등) - 폐업회사인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임용예정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8.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필요시제출	○ 학위별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도 (전문)학사 포함 각 학위별 증명서 모두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9.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필요시제출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필수 제출을 요함 ※ 경력 검증을 위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주의사항	○ 필수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8.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근무시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년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기간 : 선발개요 참고(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주35시간)	—	58,894천원

비고

1. 연봉은 상·하한액의 범위에서 책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임용약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
3.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시험 전형 결과 임용예정분야 직무 수행을 위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경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임용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할 예정입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시험절차 등	인사혁신과	043-220-4733	
업무관련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35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서식(제1호~제6호) 각 1부.